

[사 건 명] 행심 2018 - 8

『재심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 피청구인 : ○○위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심 기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와 ○○○○는 인천●●고등학교(사립학교) 학생으로, 2016. 4월경부터 2017. 11월 초순경 까지 ■■■, ○○○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이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는 것에 가담하고 정신적으로 놀리는 학교폭력 행위를 지속하였고, 청구인 ○○○○는 2017. 4월경 피해학생이 자신을 페이스북 친구에서 삭제하였다고 오해하여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다리를 십여 차례 가격하였다.

나. 2017. 11. 08. ●●고 교사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었고, 가해학생들에게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11.08.~11.21.) 조치하였으며, 2017. 11. 21. 인천●●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와 ●●●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위 인천●●고등학교장은 청구인 ◇◇◇와 ●●●에게 조치결과를 통지하였다. .

- 다. 2017. 12. 06., 12. 08.에 청구인 ◇◇◇와 ●●●는 ○○위원회에 『전학』 처분에 대한 재심을 각각 청구 하였고, 2018. 01. 05.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심기각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을 각 청구인에게 하자, 이에 불복하여 위 청구인 ◇◇◇와 ●●●는 2018. 1. 22. 본 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인천●●고등학교 학폭위와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전학’ 이라는 무거운 조치를 하였다.
- 나. 피해학생의 신체조건은 청구인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1학년 당시 청구인들과 같은 반 친구들은 상호 ‘병○’, ‘씹○끼’ 등으로 서로 호칭하여 왔어 이를 꼭 집어 누구 한사람의 잘못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청구인들과 피해학생은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반 급우사이로 지내왔다.
- 다. 청구인들은 ○○○, ■■■과 어울리긴 했지만 ○○○, ■■■이 피해학생을 폭행할 때 같은 공간(교실, 미술실)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었고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 라. 청구인 ◇◇◇는 간혹거리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학생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 피해학생은 청구인 ◇◇◇에게 빵 사주기 게임을 제안하는가 하면, 청구인을 기망하여 빵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게 만들 정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적대감이 없었고, 오히려 놀려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바. 청구인 ○○○는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을 한차례 때린 사실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은 적이 없고, 피해학생 생일빵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돈 갈취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돌려주고자 하였으나 피해학생과 접촉이 차단되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6년도 1학년 당시에는 청구인들과 피해학생은 남학생들 간의 특타거리는 장난정도로 시작되었으나, 청구인들은 피해학생이 중학교에서 학폭 피해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면서 ‘저 애(피해학생)는 놀려도 되는 아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모욕감을 주는 대화를 하여 조롱거리로 삼아왔다.

나. ○○○, ■■■과 함께 청구인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공동폭행은 거의 매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청구인들이 학급을 교체한 피해학생을 찾아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도 상당히 많으며 2017년 이 사건 자치위원회 개최 무렵까지 계속 되었다.

다. 청구인 ◇◇◇의 경우 폭력성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나, 정신적 심리적 공격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 ○○○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것에 가담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피해학생이 청구인 ○○○를 페이스북 친구에서 차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을 청구인 ○○○는 듣지 않고 화를 내며 피해학생의 다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이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사과는 커녕 ‘뭐 어찌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점을 피청구인은 주목하였고, 목격자 진술을 보아도 피해학생의 고통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사과 의지를 높이 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분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정신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고등학교에서 피해학생의 소속 학급을 옮겼음에도 청구인들은 피해학생과 마주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놀려대어 학급교체 조치도 아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7조의 2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보충서면)와 답변서(제출된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각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참가인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 ■■■과 공동하여 2016. 4.경부터 2017. 3.말경 까지 ●●고등학교 1학년 8반 화학반 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에서 피해 학생(■■■)에게 학교 쉬는 시간에 벽에 기대어 있게하고 팔로 압박한 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어깨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와 공동하여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고등학교 2학년 생명반 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에서 위 피해 학생(■■■)에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반복되는 폭행 및 폭언 이외에도 청구인 ○●●는 페이스북 메신저 수신 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피해학생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 폭행을 가한 사실 및 피해 학생이 청구인 ○●●를 대신해 받은 아르바이트 일당 중 일부 금액(5,000 원)도 피해 학생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한편, 2017. 11.경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피해 학생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담임교사가 확인하여 피해 학생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 되어 본 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 학생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게 되어 2017. 11. 22.부터 2017. 12. 22.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해 오고 있는 중이며, 피해학생의 부모는 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고, 최근 청구인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면 피해학생은 청구인들에게 약 1년 6개월 가량 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 학생은 청구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대항을 한다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사안만 복잡해질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잠재의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비록 청구인들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대학입시 준비를 앞두고 있다거나 위탁교육 중이어서 한 달에 1회 정도 밖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해 전학조치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 행태, 피해 기간, 피해 정도, 청구인과 피해 학생과의 관계,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피해 학생의 부모 및 학교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현재 청구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존재감만으로도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정신과 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전에 있는 ‘한빛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물론 청구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학생과 청구인들을 학교에서 분리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